

# 지방자치 정책Brief

## 지방규제개혁, '간주규정' 도입 등 소극적 행태 개선

### 새로운 시각에서의 지방규제개혁 필요성

-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소상공인 등 피규제자들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 우선적으로 자동 인허가제도 간주규정 등을 도입하여 소극적 행태로 인한 민간의 피해를 줄이고, 행정절차의 신속화와 간소화 필요
- 규제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규제프리존 도입,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미연에 방지

### 소극행정의 개념, 유형 및 원인

- 소극행정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협의)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광의)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예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업무행태를 의미
- 2015년 감사원에 따르면 소극행정의 유형은 적당 편의, 업무행태, 탁상행정 및 기타 관 중심의 행정으로 구분
  - 감사원에 접수된 '소극적·업무회피성 업무행태 등' 관련 민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4,803건, 4,744건, 6,690건, 7,330건, 7,143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

〈소극행정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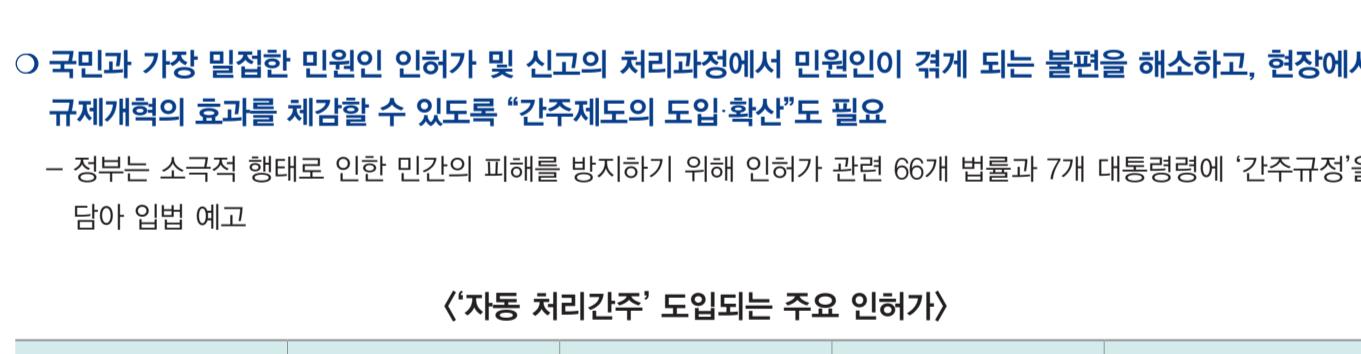
유형	의미 및 내용
적당 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는 업무처리 행위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실만을 모면하려는 무사 안일한 행태
업무행태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에 젖어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업무 행태
기타 관 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떠넘기거나 조직이기주의적인 행태

자료 : 감사원(2015)

-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을 통해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의 소극행정 문제 파악

- 지방규제개혁의 성과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법률, 조례 등에 정한 업무의 수행뿐만 아니라 규제 관련 각종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현장에서는 소극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사혁신처(2015)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 관행에 따른 업무처리, 처벌위주 감사 등 다양한 이유로 소극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 시각에서의 소극행정 발생원인



자료 : 인사혁신처(2015)

### 지방규제개혁 성과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 지방규제와 관련된 소극행정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은 규제프리존 도입,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등을 통해 규제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임
  -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규제정책 추진과 더불어 규제비용종량제 실시, 효력상실형 일몰제 등의 강화 필요

-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인 인허가 및 신고의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간주제도의 도입·확산"도 필요
  - 정부는 소극적 행태로 인한 민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관련 66개 법률과 7개 대통령령에 '간주규정'을 담아 입법 예고

〈'자동 처리간주' 도입되는 주요 인허가〉

건명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산지전용 허가·신고	교습소·개인 과외교습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연간 건수	약 91만 8천건	약 2만 1천건	약 2만 1천건	약 4천 6백건

자료 : 국무조정실(2016)

- 시민들의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행태와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교육, 면책제도 내실운영 등의 조치 병행

〈소극행정 극복을 위한 개선 방안〉

구분	세부 개선 방안
실무 중심의 지속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지방공무원 대상의 지속적 교육</li> <li>- 지역의 민원 해결에 기여 및 지방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내용 중심의 교육 필요</li> </ul>
면책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원법'(제34조의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등에서 규제개혁에 관한 면책 규정 명시</li> <li>-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의 면책에 대한 규칙 또는 훈령은 규제개혁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점에서 적용대상의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 필요</li> </ul>
예방중심의 감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의 방향을 처벌 위주에서 예방 중심의 감사로 전환 필요</li> <li>- 예를 들어, 경기도의 사전컨설팅 감사와 같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적용하여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유도 필요</li> </ul>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담당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및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필요</li> <li>-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문컨설팅단 구성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li> </ul>

▶ 내용문의 : 박해육(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02-3488-7337, hypark@krila.re.kr)

▶ 본문보기 : 「박근혜 정부의 지방규제 개혁추진 전략」 세미나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원문보기\]](#)

▶ 지난호 보기 : 지역발전특별회계 도서개발사업 개편 시급하다(박진경 수석연구원) [\[원문보기\]](#)

✉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